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6-25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2306 상속권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6-25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중국 국적인 피고와 대한민국 국적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6.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나. 피고는 2013년 설 명절 즈음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하여, 망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5042호로 이혼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20.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3르82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9. 12.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3. 9.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건의 1심에서 이혼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고, 망인과 피고간의 이혼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청구부분의 경우에도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수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수계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6-25

살피건대, 제1심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는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부분만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청구소송은 피고의 소취하 여부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취하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6-25

판사 김두홍

판사 구창규